

공 고

◆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4-736호

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및 사업인정(의제)에 대한 의견청취 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96호(2012.07.26.) 정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, 2015.12.01.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1-54호(2021.03.25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479호(2021.09.02.)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2-125호(2022.08.18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한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,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.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은 시행계획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로 의견서 [제목, 내용, 주소, 성명(날인)]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4월 4일
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

가. 공람기간 : 2024. 4. 4. ~ 2024. 4. 18. (공고일 포함 15일간)

나.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내용

- 1) 사업종류 및 명칭 :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
- 2) 사업예정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304번지 일대
- 3) 사업면적 : 89,332.5㎡
- 4)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㉠ 성명 :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최형용
 - ㉡ 주소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 167, 3층
- 5)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
- 6) 건축계획 : 지하7층/지상16층, 공동주택 25개동, 1,522세대(임대 260세대 포함) 및 부대복리시설
- 7) 정비기반시설 : 도로 3,903.9㎡, 공원 5,336.1㎡, 녹지 1,557.6㎡, 공공청사 2,933.9㎡, 문화시설 3,048.5㎡

다. 공람장소 :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 (☎02-820-9804),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(☎02-3280-9557)

라. 의견서 제출 :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

마. 관계도서 : 공람장소에 비치

◆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4-740호

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촉구 및 압류예고 (2023년 장기미사용승인 부과)

관내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소유자에게 『건축법』 제80조에 따라 건축과-6001(2024. 3. 13.)로 장기미사용승인(장기미준공) 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촉구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및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4일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

1. 공고대상

연번	대지위치	소유자	위반내용
1	대방동 3*0-2*	번*규	- 옥탑위반(옥탑면적증가 8.94㎡ 및 주거용으로 사용) - 사전입주 - 발코니위반(무단발코니 설치(1층 4.2㎡, 2층 11.4㎡, 3층 11.4㎡)) - 주차장위반(옥외주차 2대 미확보) - 기타(외부계단 및 발코니설치로 건물형태변경, 기초중간검사 미필, 지층노출(0.3m), 현황측량성곽도 미제출, 단열재 중간검사 미필)
2	사당동 9*-1**	예*****희	- 지상1,2층 증축(47.22㎡) -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임
3	신대방동 6*8-1*7	심*안	- 대수선 지붕변경 66.12㎡ - 공사완료,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임.
4	노량진동 1**-1*0	조*옥	- 사전입주 18.68㎡ - 무단증축 7㎡
5	사당동 2*2-3*	김*시	- 지층노출(0.4m) - 사전입주 - 옥탑위반(옥탑용도변경 시공) : 9㎡ - 주차장위반(주거용시공으로 주차불가) - 면적증가(지층~2층:4.36㎡, 3층:10.06㎡) - 이격거리위반(담장일부 인접경계 침범) - 면적 증가 : 23.14㎡
6	노량진동 7*-*-*	구*경	- 지상1층 증축(6.76㎡) -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임

2. 공고기간 : 2024. 4. 4. ~ 2024. 4. 18. (14일간)

3. 의견제출기한(부서명) : 2024. 4. 18.까지(동작구청 건축과)

4. 처분제목 :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촉구 및 압류예고(2023년 장기미사용승인 부과)

5. 처분근거 : 제80조

6. 처분내용 : 상기 공고 대상자가 소유·관리하고 계신 건축물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기한 내에 미시정되어 기예고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, 체납되어 납부촉구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함을 알려드립니다.

7. 의견제출시 유의사항

- 가.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·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,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구 건축과에 알려주시고,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다. 귀하께서 직접 출석하여 의견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구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.
- 라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동작구청 건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